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70

발의연월일: 2024. 8. 13.

발 의 자:김영호·한민수·박지원

박희승 • 정성호 • 문대림

강선우 · 복기왕 · 강경숙

위성곤 · 오세희 · 강준현

김현정 · 김 현 · 이재강

김준혁 • 최민희 • 민형배

백승아 • 권향엽 • 박홍배

이재관 • 진선미 • 이해식
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직접 출석, 서면, 대리인 출석 및 전자적 방법을 규정하되, 전자적 방법의 경우에는 재단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서면 의결권 행사방식의 경우 서면의결서 취합, 행정보조직원의 고용 등 절차 및 비용 측면에서의 비효율, 의결서 진위여부에 대한 잦은 분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서면 방식 대신 전자적 방법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조합 총회의 의결권 행사방식으로서 서면 방식을 삭제하고 전 자적 방법을 일반적인 의결권 행사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총회 의결 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조합 총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45조제5항 등).

법률 제 호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4항 중 "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"를 "전자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방법"으로, "서면의결권"을 "전자의결권"으로 한다.

제4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서면"을 "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서면"을 "전자적 방법"으로, "출석"을 "직접 출석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"서면의결권"을 "전자의결권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9항 중 "서면의결권"을 "전자의결권"으로 한다.

제1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 한다.

① 조합이 제4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전자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제4항 및 제45조제 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총회의 소집) ① ~ ③	제44조(총회의 소집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총	4
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	
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	
적·안건·일시 및 장소와 제4	
5조제5항에 따른 <u>서면의결권의</u>	<u>전</u> 자의결권의 행
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	<u>사기간 및 방법전자의결권</u>
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	
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	
다.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45조(총회의 의결) ① ~ ④	제45조(총회의 의결) ① ~ ④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⑤ 조합원은 <u>서면</u> 으로 의결권	⑤ <u>전자적 방법(「전</u>
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	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
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	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
행사할 수 있다. <u>서면</u> 으로 의결	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
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	<u>말한다)</u>
수를 산정할 때에 <u>출석</u> 한 것으	
로 본다.	

1.	\sim	3	(생	략)
1.		U.	/ · O	-1

- ⑥ 조합은 제5항에 따른 <u>서면</u>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⑦ (생략)
-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 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・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 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으로 의결권을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⑨ 총회의 의결방법, 서면의결
 ⑨

 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
 권---

	<u>전자적 방법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 ⑥ <u>전자</u> 의결권 ⑦ (현행과 같음)	
⑥ 전자 의결권 ⑦ (현행과 같음)	<u>직접 출석</u>
⑥ 전자 의결권 ⑦ (현행과 같음)	
<u>의결권</u> ⑦ (현행과 같음)	1. ~ 3. (현행과 같음)
 	⑥ <u>전자</u>
	의결권
<u><삭 제></u>	⑦ (현행과 같음)
	<u><삭 제></u>

⑨ -----<u>전자의결</u> 권-----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 -----다. --.

제140조(과태료) <u><신 설></u>

①·② (생 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 대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<u>.</u>
제140조(과태료) ① 조합이 제45
조제6항을 위반하여 전자의결
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본
인확인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
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를 부과한다.
$\underline{2} \cdot \underline{3}$ (현행 제 1 항 및 제 2 항
과 같음)
<u>④</u> 제1항부터 제3항까지